

의안번호	제 131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3월 일 (제 298 회)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임 현 의원외 6인
발의연월일	2011년 2월 25일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 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
----------	-----

발의연월일 : 2011년 2월 25일
 발 의 자 : 임 현
 권기수, 김동환 임현경,
 이수완 김재중, 이광진

1. 개정이유

- 민선 5기에는 도의 확고한 균형발전 의지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코자 세입재원으로 “국가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을 추가하여 안정적·지속적 지원을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용어 및 일부조문 개정 (제2조 제3호, 제6조)

- 불균형 실태조사 ⇒ “지역발전도 조사”

나. 국가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 매년 지원예산의 5%이상 금액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는 조항 신설(제11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5퍼센트 이상 금액 중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

다.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정비(제11조, 제13조)

- “타 회계” ⇒ “다른 회계”, “기타” ⇒ “그 밖에”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을 “관리·운영에 필요한”으로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취 : 붙임

5.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낙후지역”이란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지역발전도를 조사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시·군을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낙후지역 선정) ① 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별 지역발전도를 조사·분석하여 매 5년마다 낙후지역을 선정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 중 “타 회계”를 “다른 회계”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5퍼센트 이상 금액 중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

제13조 중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을 “관리·운용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 2. (생략)</p> <p>3. “낙후지역”이란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불균형 실태를 조사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낙후지역”이란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지역발전도를 조사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시·군을 말한다</p>
<p>제6조(불균형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간 불균형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불균형실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제6조(낙후지역 선정) ① 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별 지역발전도를 조사·분석하여 매 5년마다 낙후지역을 선정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제11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신 설></p> <p>2.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p> <p>3. 차입금</p> <p>② (생략)</p> <p>제1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영)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1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5퍼센트 이상 금액 중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p> <p>3.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에 수입금</p> <p>4. 차입금</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영)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관 계 법 령 발 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4조(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예수금)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광역발전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36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 (1)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 (2)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 (3)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 (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산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사업

2.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용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규정(훈령 제1292호, 2009. 10.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연구·자문,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항
2.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 관련 사항
3.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성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인적자원 개발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 관련 사항
6. 지역발전 주체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도 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과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발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